

[일본] 19개 유해물질의 함량제한 및 5개 시험방법 개정안 입법예고

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(2022. 2. 14.)

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월 24일 유해물질 함유 생활용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개 유해물질의 함량기준 및 5개 시험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.

-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월 24일 유해물질 함유 생활용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개 유해물질의 함량기준 및 5개 시험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2월 22일까지 받았다.
- 유해물질 함유 생활용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1개의 지정 유해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합물 및 생활용품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.
- 일본 후생노동성은 개정안이 오는 3월 공포돼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[지정 유해 물질에 대한 개정된 함량 기준]

연번	물질명	용도	함량기준
1	트리클로로에틸렌(TCE)	가정용 에어로졸 제품 및 세척제	0.1% (w/w)
2	디엘드린(dieldrin)	가정용 섬유 제품 및 모사용	30 (µg/g)
3	메탄올(methanol)	가정용 에어로졸 제품	5% (w/w)
4	유기수은 화합물 (organomercury compound)	가정용 섬유 제품, 접착제, 페인트, 왁스 및 구두 광택제	1 µg/g
5	염화비닐(vinyl chloride)	가정용 에어로졸 제품	미검출 수준

- 다음 물질에 대한 개정된 시험 방법의 시행 제안은 2022년 3월에 시작될 예정이다.
- 4,6-dichloro-7-(2,4,5-trichlorophenoxy)-2-trifluoromethylbenzimidazole
- Dieldrin
- Tetrachloroethylene
- Trichloroethylene (TCE)
- Methanol